

(재)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2025년 '구미 청년예술 창업특구 조성사업'

예술분야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지역 청년예술가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창의적 예술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5년 구미 청년예술 창업특구 조성사업 예술분야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 예술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4월 14일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원장

- 사업명 : 2025년 '구미 청년예술 창업특구 조성사업'
- 지원명 : 예술분야 예비창업자지원
- 추진목적 : 예술분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창업기반 제공, 초기 창업 리스크 최소화하여 성공적인 창업 연결

4. 지원개요

| | |
|-----------|---|
| 지원대상 | 구미지역 예술분야 예비 창업자(19~39세 대한민국 청년 개인 또는 팀) · 예비 또는 1년 이내 창업자(2024년 4월 이후 사업자 등록자) · 39세에 해당하는 해에 출생한 자 포함(1985년 출생자 까지) |
| 신청분야 |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어문,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예술분야] |
| 지원내용 | · 역량강화교육, 창업지원금(최대 2,500만원), 창업 전문 컨설팅 등 · 자부담금 10% 별도(지원금의 10% 250만원) |
| 선정규모 | 5명(팀) 내외 |
| 대상지 | 본 지원사업으로 창업 시 구미 금오시장로 일원 사업장 소재 必 ※세부사항은 지원내용 참조 |
| 신청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5년 4월 14일(월) ~ 2025년 4월 29일(화) 접수 : 2025년 4월 22일(화) ~ 4월 29일(화) 17:00까지 |

※ 지원금액 및 선정규모는 평가결과 및 예산현황에 따라 조정 가능

5. 지원내용

| | | |
|-------------|--|--|
| 신청자격 | 구미지역 예술분야 예비 창업자인 19~39세 대한민국 청년(개인 또는 팀) ·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2024년 4월 이후 사업자 등록자) · 39세에 해당하는 해에 출생한 자 포함(1985년 출생자 까지) · 최종 선정 3개월 이내 구미시 주소 이전 전제 (2년간 사업장 소재지 유지 必) · 팀 인원 : 2~3명으로 구성,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예술분야 :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어문,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 |
| 지원기간 | [1단계] 예비창업자 역량강화교육 1개월, [2단계] 예비창업자 사업화지원 5개월 | |
| 지원내용 | [1단계] 예비창업자 역량강화교육 | · 창업 기획 역량 강화 교육(회계·세무, 지적권, 디자인 등) · 창업 아이템 고도화 및 사업계획서 보완 |
| | [2단계] 예비창업자 사업화지원 | · 예술분야 콘텐츠를 활용한 창업 아이템 개발 및 사업장 운영을 위한 창업지원금 2,500만원 지급 * 지원금 용도 : 사업장 운영비, 개발활동비(재료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 외주 제작 및 가공비(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 사업화를 위한 진단 및 심화 컨설팅 지원 |

6. 신청방법

| | |
|-------------|--|
| 신청방법 | <p style="text-align: center;">접수기간 내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접수</p> ※ 제출기한 엄수, 모집기간 내 신청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한해 접수함 ※ 모든 서류는 직인 직접 날인 후 스캔본 제출 |
| 제출서류 |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자 신분증사본 1부(팀원 전원 필요)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사본의 경우,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 후 제출 |
| 제출처 | cinepark@dgdg.or.kr |

7.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총 2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 서류검토는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담당자가 진행하며, 선정 이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① 서류검토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② 1단계 평가(서면) :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1단계 지원자 선정
- ③ 2단계 평가(발표)
 - 창업 아이템 개발 동기, 창업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2단계 창업지원자 선정
 -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창업 아이템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지표

- 1단계 평가(서면)

| 평가항목 | | 세부항목 | 배점 |
|---------------------|------|--|-----|
| 1단계 평가 (100점) | 창의성 | - 창업아이템의 창의성 및 독창성 - 기존 시장과의 차별화 요소 | 30점 |
| | 사업성 | - 창업 아이템의 현실적 실행 가능성 - 목표 시장에서의 경쟁력 및 성장 가능성 | 30점 |
| | 계획성 | - 사업 모델 및 수익구조의 타당성 - 단계별 추진 전략 논리성 - 예산 계획 및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현실성 | 20점 |
| | 적정성 | - 지원자 창업 경험 및 전문성 - 창업에 대한 의지 및 지속가능성 | 10점 |
| | 기대효과 | - 개발에 따른 직·간접적 시너지 및 활용 | 10점 |
| | | | 총 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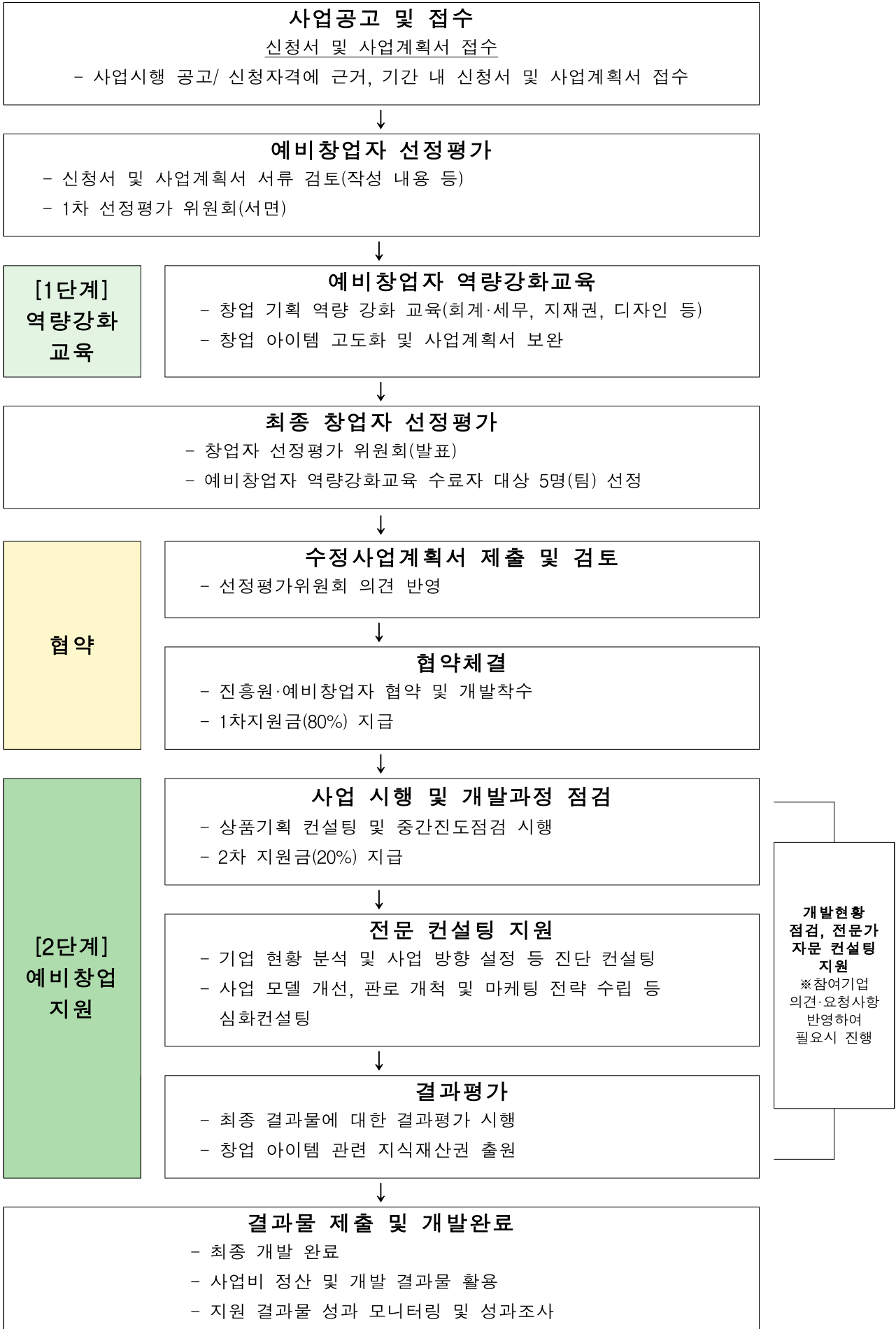
- 2단계 평가(발표)

| 평가항목 | | 세부항목 | 배점 |
|---------------------|------|---|-----|
| 2단계 평가 (100점) | 적합성 | - 창업아이템의 실현 가능성 - 시제품 제작 및 기술적·디자인적 구현 가능성 - 지역 및 사업 목적과의 적합성 | 20점 |
| | 수행능력 | - 지원자의 전문성, 창업 역량, 개발능력 - 사업 운영에 대한 추진력 및 실행력 - 팀 구성원의 역할과 조직 운영 계획 | 30점 |
| | 시장성 | - 시장에서의 경쟁력 및 시장 진입 가능성 - 지속적인 확장 가능성 및 장기적 성장 전략여부 | 30점 |
| | 적정성 | - 사업비 편성, 자금조달 계획 적정성 | 10점 |
| | 기대효과 | - 개발에 따른 직·간접적 시너지 및 활용 | 10점 |
| | | | 총 계 |

○ 최종선정

-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주관기관에서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8. 사업 운영 일정



9. 유의사항

9-1.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운영하려는 점포 건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업종에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자(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자
- 재직 청년(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창업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 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중인 자
- 사업의연속성을 침해할 수 있는 귀책사유(군입대, 유학, 복학 등)
- 보조금 취지 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
- 기타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하여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
 -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등

10. 참고사항

- 사업 전제 조건
 - 창업 후 1년 이내 휴·폐업, 2년 이내 주소 이전 시, 지원된 보조금 전액 회수
 - ※ 단, 천재지변 으로 인한 폐업 시 예외
 - 창업자는 협약 체결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양수 할 수 없음
- 지원금 지급 시
 - 운영기관↔청년창업자간 협약을 체결하고 창업활동비는 청년창업자 보조금 전용 계좌로 지급(1차 80%, 2차 20%, 단 수행기관 판단하에 지원비율 조정 가능)
 - 구미시 「예술창업」 현판 제작 필수(현판 디자인 제작 예정)
 -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나 대상자 선정 전에 실시한 공사 지출 건은 불인정
 - 지원금 사용은 개별 지원 최대금액을 준수하여야 함
 - **자부담은 지원금 총액(최대2,500만원)의 10%(최대 250만원) 필수 부담해야 함**
- 환수조치 및 제재부가금 : 부정사용이 있을 경우 부정사용액에 대한 환수조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사용자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기준>

| 참여제한 및 지원금(활동비) 회수사유 | | 제재 및 환수범위 | |
|----------------------|------------------------|-----------|----------|
| | | 제한기간 | 지원금 환수액 |
| 1 | 사용내역 허위보고 및 사용용도 이외 사용 | 2년 | 지원금 총액 |
| 2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교부받은 경우 | 3년 | 지원금 총액 |
| 3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화 과제수행 포기 | 3년 | 지원금 총액 |
| 4 | 보고서 미제출 등 시정조치 불이행 시 | 2년 | 지원중단, 퇴출 |

*** 지원금 환수기준**

1. 사용내역허위보고, 사용용도 이외사용 : 기 집행금액 포함 지원금 총액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지원금 총액 환수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화 과제수행 포기 : 기 집행금액 포함 지원금 총액
4. 시정조치 불이행 : 지원중단, 퇴출

-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지방보조금 시행령 제21조 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위반행위 | 제재부가금 부과율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500% |
|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100% |

2. 부과권자는 제1호가목2)·3) 및 같은 호 나목2)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제1호나목3)의 위반행위가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적격 신청서(사업계획)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신청서 접수 현황에 따라 연장공고 또는 추가모집 진행 가능)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금액은 변동 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지원(동일제품에 대한 동일내용 지원)인 경우, 협약 전 필수사항(사업자 등록지), 협약 기간 내 사업 중단 시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모든 신청서(사업계획)의 제안 내용에 ‘개발 후 상용화 계획(일정 포함)’ 을 포함시킬 것
(※ 상용화 가능성 및 계획의 구체성의 중점 평가)
- 협약종료 이후에도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성과·수요조사)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지원범위는 신청서(사업계획) 특성 및 지원금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지원 후 1년 이내 상품화 실패 시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할 수 있음
-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ex. 주류유통·판매업(제조업은 신청가능), 숙박업,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12. 관련 문의

| 담당 부서 | 연락처 | e-mail |
|---------------|--------------|----------------------|
| 공공서비스실 공공서비스팀 | 053-766-5995 | cinepark@dgdpo.or.kr |

13. 사업신청 및 제출 관련 양식 다운로드

- (재)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 고시/공고 - 본 공고 첨부파일